하남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2198 발의연월일 : 2021년 3월 5일

발 의 자 : 김낙주 의원

1. 제안이유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 나 목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 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자문위원회 설치 ·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5.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1년 3월 5일 ~ 3월 10일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6. 부서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하남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유해환경 요소를 관리하여 하남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사장"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건축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 환경 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주변 공사장의 범위는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 가. 공사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 4. "건축관계자"라 함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 5. "공사장 환경"이라 함은 공사장으로부터 인접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6.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 7. "중·대형 공사 차량"이라 함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1톤 이상 적재량 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
- 8. "통학로"라 함은 어린이,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 9. "통학시간"이라 함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 10. "절대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 11. "상대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 12. "주택건설공사"라 함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설 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또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란 제2조제2호의 학교 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철거신고 및 착공신고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

- 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 표기한 위치도)
- 2.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경보장치의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 3. 교통소통계획
-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 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
-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
- 라. 중·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 (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 4. 안전교육계획(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 전교육 실시 계획)
- 5. 비상시 긴급조치계획(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 등과 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
- 의 생활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의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 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 관리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⑦ 제3항의 안전관리 계획서상 교통 분야는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전문(계획) 위원회로 대체 운영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중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이거나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의로써 사전에 검토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는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③ 간사는 해당 공사장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④ 자문위원회는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자문을 신청한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상정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주변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중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공사장의 건축관계 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건축관계자는 시민협의체와 공사장 주변의 환경관리 및 안전 확보, 학생·보행자의 교통안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민협의체는 건축관계자와 시민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민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시장은 시민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의 제공,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① 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 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 이 발생하여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는 조속히 보수・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중・고등학교 (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 으로 노력한다.
 - ④ 시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시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제3조에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및「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 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 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 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 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 ②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2019. 4. 30.〉
-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2015. 5. 18., 2018. 12. 31.〉
- ①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 ®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5. 17., 2016. 8. 11., 2018. 1. 16., 2019. 12. 24., 2021. 1. 5.〉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 5의2.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개정 2015. 7. 6., 2016. 1. 12., 2018. 12. 11., 2020. 1. 7.>
- ③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12. 29., 2019. 6. 25., 2020. 1. 7.〉
- ④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12. 29., 2018. 1. 16., 2020. 12. 1.〉
- 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9. 6. 25., 2020. 1. 7.〉
-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⑥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20. 1. 7.〉
- ⑦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안전에

-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10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관 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⑨ 법 제62조 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 ①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 검토와 그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6. 25.〉